

18. 의무유급/제적/재입학

* 의무유급

의무유급제도는 학업부진자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학사경고 횟수에 따라 유급하도록 하여 학생에게 학업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의무유급제도

- 학칙에 따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의무유급 조치되며, 유급 학기의 성적은 무효처리됩니다.
- 의무유급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포함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, 최대 2개 학기까지 의무유급이 가능하며, 지정기간 내에 GLS를 통해 의무유급 학기를 선택해야 합니다.
- 지정기간 내 의무유급 학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전학기 포함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가 아닌 경우는 1개 학기 의무유급 처리됩니다.
- 의무유급 학기의 성적은 무효(학사경고 기록 포함)로 합니다.
- 유급학기의 계절수업 및 해당학기 이후 휴학 중 계절수업을 통해 취득한 성적도 무효 처리됩니다.
- 의무유급 2회 이후 재차 연속3회, 통산4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경고계적처리 됩니다.
- 수료/수여대상자가 졸업 직전학기 학사경고로 인해 의무유급대상이 될 경우, 유급 조치가 선행됩니다.

* 제적

제적은 자퇴, 학사경고(의무유급 2회 후 재차 연속3회, 통산4회 받은 경우),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,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재입학 여석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.

• 학사과정생의 학사경고 제적

- 의무유급 2회 이후, 학사경고 횟수가 입학시점부터 시작하여 연속3회 또는

2000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하여 통산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사경고 제적 처리됩니다.

- 2001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입학생으로서 최초등록학기부터 2개 학기 연속으로 학업성적이 각각 평점평균 1.00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 제적 처리됩니다.
- 재학 중 받았던 학사경고는 유급, 제적,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대로 유지되며 재입학, 복학 시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 학사경고의 연속 또는 누적 횟수에 적용됩니다. 다만,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입학 이후부터 새로 산정합니다.
-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될 경우(재차 학사경고를 연속3회, 통산4회를 받은 경우)에는 영구제적되며, 재입학이 불가합니다.
- 수료/수여대상자가 졸업 직전학기 학사경고로 인해 제적대상이 될 경우, 제적 조치가 선행됩니다.

• 자퇴제적

-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제적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이 소속 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• 휴학만료제적

-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.
- 입대휴학한 학생이 제대일이 포함된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·복학 기간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.

(예시) 전역일자가 2022년 5월 중에 있는 학생은 2023학년도 1학기 개강 전 까지 반드시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,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후 재입학해야 함

• 미등록제적

-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.

★ 재입학

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재입학 신청은 매년 1월, 7월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진행됩니다.

- 재입학 신청
 - 재입학 신청은 제적일로부터 1년(2개 학기)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.
 - 2021년 3월 22일 제적되었을 경우, 1년이 경과한 2022년 3월 22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므로, 2022년 2학기 재입학신청기간인 2021년 7월 18일~22일에 재입학 신청 가능함
 - 단, 입대휴학만료제적자 및 졸업/수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학사경고제적된 학생의 경우 재입학 제한기간을 두지 않습니다(직후 재입학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).
 -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.
 - 재입학 가능여부는 정원내외별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입학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학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재입학자 수업연한 재부여
 -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제적 전 등록한 횟수 및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년 및 학기를 조정하여 수업연한을 새로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의 재입학 제한
 -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가 2000년 3월 1일 이후 재입학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되면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.

